

##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견

#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취득사유가 발생한 공유 재산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산업단지내 공영주차장 설치
- 취득대상 재산현황

사업명	구 분	소재지	면적(m <sup>2</sup> )	구 조	시설개요	소요예산 (천원)
산업단지내 공영주차장 설치	토 지	신평동 545-2	1,674.2		주차장 50면	1,462,000
	건 물	“	978.9	철근콘크리트조 외		258,000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사항은 2006년도에 취득할 공유 재산을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사전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신평,장림공단측의 요구에 의거 산업단지내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여 공단내 직원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,
- 재원은 시비 400,000천원, 구비(주차장특별회계) 1,420,000천원을 확보하여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.

2005. 12. 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